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0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윤영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박 석, 박영한, 서상열,
송도호,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정준호, 채수지,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35
명)

1. 제안이유

- 2024년 12월31일 1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양천구 깨비시장 차량돌진사고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발생 2년전부터 치매를 앓은 것으로 진술했고, 사고당일경 치료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 2024년 11월 기준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 환자(65세 이상)는 약 68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같은 기간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노인 치매 환자는 약 105만명으로 집계되어 약 37만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현행 「도로교통법」 치매증상은 운전면허 결격사유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해당하나, 전문의가 치매로 인정한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 치매 진단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치매로 인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처럼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나, 실제 운전자의 치매진단 이후 절차나 방식에 있어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바, 조례를 개정하여 고령운전자 및 치매 진단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할 수 있도록 병원과 경찰청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6조에 치매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치매진단시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제6조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한 목표 수립 및 홍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다. 치매진단 관련 교육·홍보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진단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관련사항을 정보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령운전자의 치매진단시 면허 관련 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목표수립 및 홍보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지원
을 위해 서울특별시경찰청,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u><신설></u> <u><신설></u> 3.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u>고령운전자의 치매진단시 면허 관련 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및 홍보</u> 4. <u>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목표수립 및 홍보</u>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u>시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경찰청,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제9조 (생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도시교통실)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년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6조제1항	교통사망사고 줄이기(붙임1)	8,711,400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1] 2025년 서울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설명서

□ 사업목적

-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교통운영 시설 개선과 교육 및 홍보 실시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및 제4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의무)
 - 교통안전법 제17조(교통안전기본계획)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장방침, 교통운영과-7921(2014.4.28.)호]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전역
- 규 모 :
 - 교통안전교육 및 행사운영 등
 - 면허증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 교통사고지점 교통시설 개선사업
 -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사고지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 사업기간 : 2025. 1월 ~ 2025. 12월
- 사업내용 :
 - 면허증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교통안전 콘텐츠개발, 교통안전 시민홍보 등
 - 시 관리 도로 교통시설안전진단 및 시설물 개선
 - 교통사고지점 교통시설 개선사업 및 보행자 안전시설 보강 등